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순	내 용
1	총칙
2	조직 및 업무
3	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
4	운영평가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CP운영지침 개정이력

Rev. No.	제/개정일자	제/개정 내용	비고
0	2024. 01. 10	FIRST ISSUED	
1	2024. 02. 19	자율준수 편람 개정주기 변경	
		사전업무협의제도 추가	
2	2024. 05. 13	자율준수협의회 정기회의 빈도 변경(분기 1회 > 월 1회)	
		최고경영자 CP운영 보고주기 변경 (분기 1회 > 월 1회)	
		자율준수편람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명시	
		효과성평가 지표 명시	
3	2024. 11. 25	사전업무협의제도 세부규정 추가	

CP 운영팀장	자율준수 관리자	대표이사
		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목적)

본 지침은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회사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(적용범위)

본 지침은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,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 본 지침에 반하는 회사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본 지침이 우선 적용되어야한다.

제 3조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CP: "Compliance Program"의 약자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, 감독, 점검 등 회사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구체적 행동요소와 실행 방안을 말한다.
- 2. 공정거래법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(공정거래법)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하도급법)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에 관한 국내 제반 법률을 말한다.
- 3. 자율준수: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.
- 4. 자율준수관리자: 회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CP운영팀: 자율준수관리자를 필두로 CP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6. 위험관리부서: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 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.
- 7. 임직원: 고용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.
- 8. 제재 조치: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,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당사 사규에서 정한다.
- 9. 자율준수편람: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기준, 절차,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.
- 10. 인센티브: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회사, 고객,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.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2. 조직 및 업무

제 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

제 4조(최고경영자의 의무)

- 1.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2.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,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3.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 절차 등을 지시하고 필요 시 관련 임직원에게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제 5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)

- 1.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회사 임원 중 CP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는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임명한다.
- 2.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.
- 3.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련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, 해임된 사실을 임직원과 사내·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제 2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 6조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)

- 1.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- 2.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 요구권
- 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권
-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- 5.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
- 6. 법 위반·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요구

제 7조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)

- 1.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- 2.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3.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4.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 8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)

- 1. CP 운영 기획, 감독, 성과보고
- 2.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
- 3.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
- 4. 자율준수편람의 재·개정
- 5. CP 관련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6. 내부감시체계의 운영
- 7.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
- 8. 위 7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
- 9.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
- 10.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

제 9조(CP운영팀의 업무)

- 1.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, 통제에 따른 업무 보좌
- 2. CP 운영 상의 실무 처리
- 3.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
- 4.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
- 5.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- 6.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
- 7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절 임직원

제 10조(임직원의 의무)

- 1.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
- 2.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- 3.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 업무 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
- 4.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

제 11조(업무사전점검)

- 1. 임직원은 자율준수편람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업무 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.
- 2. 자율점검 후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, 판단이 모호할 경우 CP운영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2조(사전업무협의제도) <24.02.19 1차개정 - 신설>

- 1.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담당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①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, 계약·구매·입찰 사무, 타 계열사와의 거래,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
 - ②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
- 2.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공정거래 담당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 담당은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 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3. 사전업무협의제도는 반기 1회 실시한다.

제 4절 자율준수협의회

제 13조(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)

- 자율준수협의회는 CP운영 자문기구로서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하며,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1. 위원: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부서의 임원 및 부서장
 - 2. CP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제 14조(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과 역할)

- 1. 자율준수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2.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 - 1)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,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필요 사항 권고, 자문

- 2)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
- 3) 위원별 담당부서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,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
- 4)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
- 5)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

제 15조(직접보고체계)

1.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(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)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.
2.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3.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

제 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

제 16조(선언 목적)

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.

제 17조(선언 방법)
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.

제 2절 CP관련 프로그램 운영

제 18조(CP의 운영)

1. CP운영팀은 CP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, 세부 사항은 매주 수요일 CP운영팀 회의를 통해 정한다. CP 실행 내역은 월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,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CP운영팀은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유관부서 임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임직원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3.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사내 그룹웨어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19조(자율준수편람 작성, 배포, 개정)

- 1. CP운영팀은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에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.
- 2.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 기준을 포함한다.
- 3. 자율준수편람은 CP운영팀에서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작성해야 하며, 연 2회 이상 개정해야 한다.
- 4. 편람개정에 대한 검토 주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법위반 사례를 들어 검토 진행한다.

제 20조(교육프로그램 운영)

- 1. CP운영팀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 - 1) 부서별,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
 - 2) 준법 뉴스레터 또는 준법 동향 리포트
 - 3) 기타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특강 등 교육
- 2. 사내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설이 어려운 경우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업에 의뢰할 수 있다.
- 3. 최고경영자 및 전 임원은 CP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 교육참여율은 5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4. CP운영팀은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, 의무 수강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또한 교육 미이수자, 미수료자 및 CP 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특별(보수) 교육을 실시한다.
- 5. CP관련 교육 미이수자, 미수료자 및 CP위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특별(보수)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6. CP운영팀은 효과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된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.

제 21조(위험성 평가)

- 1. 회사는 부서별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준법 CP위반 리스크가 있는 이슈사항을 식별해야 한다.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- 2. 회사는 식별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이슈사항에 대하여 예상빈도와 위반 시 영향도에 따라서 리스크 등급을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.
- 3. 회사는 예상빈도와 위반 시 영향도가 '중간'이상으로 구분된 이슈사항에 대해 경감방안을 수립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하며 다음 분기에 재평가하여 리스크 등급 경감여부를 확인한다.
- 4. CP 관련 위험성 경감을 위해 사전업무협의 절차를 둔다.
- 5. 위험성 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.

제 22조(사전업무협의)

- 1.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거나,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2. 수의 계약의 경우,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협의회 위원, 업무 담당자가 사전업무협의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한다.
- 3. 사전업무협의를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조사확인도 병행할 수 있다.
- 4. CP운영팀은 사전업무협의 자료를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한다.

제 3절 감시체계의 운영

제 23조(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)

- 1.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필수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2. 내부고발시스템은 기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. 익명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3.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 소속 직원은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4. CP운영팀은 접수된 내용에 대해 CP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5.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제보 내용에 대한 현황 및 조사결과를 연 2회 최고경영자에게 보고

 SEOKJIN E&T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하고,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한다.

4. 운영평가
제 1절 효과성 평가

제 24조(CP운영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)

- 1.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를 최소 연 2회 이상 시행하고,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.
- 2. CP 운영 효과성 평가는 아래와 같은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.
 - 1) 측정 가능해야 함(가능한 경우)
 - 2) 달성 가능해야 함
 - 3) 모니터링되어야 함
- 3. CP운영 정기감사는 철강금속 제조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법규 및 관련 정책 동향을 반영해야 하며, 타 정기감사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4. CP운영 정기감사 시 감사자가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을 경우, 감사자에서 제외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.
- 5.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정기감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며, 개선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경영검토 사항 또는 CP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
- 6. CP 운영 정기감사 수행 기록은 타 감사 기록과 구분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
제 25조(포상)

- 1.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부서 및 임직원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- 2. CP를 모범적으로 실천 또는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표창장 및 포상금 (또는 포상 성격의 상품)을 지급한다.

제 26조(위반 제재)

- 1.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한다.
 - 1)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운영팀과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영지침	문서 번호	SJCP-1001
		개정 번호	3
		개정 일자	2024.11.25
		주관부서	CP운영팀

- 2)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, 과징금,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,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3) 위 1호 내지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운영팀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
2.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3. 위 1항 내지 제 2항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상급자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. 다만, 상급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CP 참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,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이를 소명하여 인정받은 경우 이를 면책할 수 있다.
4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, 방법, 기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부서가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, 인사 규정 또는 하위 지침 등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.